



미흡한 안전조치, '위반 걸리면 사법처리'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각종 산업법 위반에 대한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현장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93.7%에 달하는 655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위반율 96.6%)에 이어 올해 역시 건설현장의 위반율이 매우 높게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현장 중 338곳(51.6%)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766개소 중 30개소(3.9%)에만 사법처리하던 것에 비하면 사법처리 비중이 무려 1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최근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쉽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하는 점점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감독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 전면중지,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183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현상이 많았다"라며 "따라서 향후에는 대형 건설현장 보다 중소규모의 건설 현장 위주로 감독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 "안전모 지급했으면 착용도 확인해야"

서울 서부지법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 황 모 씨 및 해당회사에 각각 징역 3개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한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황 모 씨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착용 사용토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황 씨는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케 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안전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전체 산업현장 사업주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 해체철거 공사의 전문성 확보 시급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물 철거 시 붕괴사고와 관련해,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 13일 '건물 철거 시 붕괴사고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5건으로 연평균(8건)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발생, 그 심각성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지난 1월 역삼동에서 7층 건물 해체공사 중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비한 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건축물 철거 시에는 신고규정만 있을 뿐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는 대부분의 행정관청들이 해체공사를 신축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체공사를 단순히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여기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해체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해체공사 관련 지침의 현실화 등을 통해 해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해체물량의 상당수가 1970년대 전후로 건립된 건물인데 이들 대부분이 10층 이하 건물(1970년 이전 92.8%, 1970년대 61.9%)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역삼동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규의 사각지대인 5~10층 사이에서 대형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후 해체공사를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본격 출범

산재예방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내에 구성된 '산업재해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선진화위원회는 3월 28일과 4월 12일 1~2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선진화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사용자 위원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운영된다. 앞으로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선진 재해예방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산재예방을 위한 새로운 노사민정 거버넌스 모형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의 주제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모 간 산재발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신규근로자,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진화위원회는 위험성평가제도의 확산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기준위반에 대한 처벌 위주의 규제방식과 정부주도 사업방식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고율 2.6배 급증

안전보건공단연구원은 근로시간과 근로자들의 건강 및 사고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 및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각종 사고로 손상을 입었던 근로자들의 경우 사고를 입지 않았던 근로자들에 비해 주 평균 근로시간이 6.84시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1일 이상 결근한 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닌 근로자에 비해 평균 4.27시간, 업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1일 이상 결근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평균 6.21시간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40시간 이하 근로자들에 비해 40시간 초과~52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사고율은 1.7배, 52시간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고율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는 건강문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요통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아닌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1.67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52시간 근로자들이 요통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40시간 이하에 비해 1.9배 이상 높았다.

그 외에도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아닌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5.27시간 길었다. 불면증,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아닌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4.37시간 더 길게 나타났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생활 불균형에 대해서는 40시간 이하 근로자에 비해 40~52시간 근로자는 2.66배, 52시간 근로자는 9.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사고 및 근로자들의 건강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근로자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가정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음식업·건물관리업, 재해예방 활동 집중 추진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의 사고성 재해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제조업 다음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업 중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의 2개 업종에 대해 직능단체와 함께 집중지원에 나선다.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지난해 각각 6,995명, 4,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이다.

공단은 음식업에 대해서는 대한영양사협회를 통해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종사자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관리업에 대해서는 건물위생용역, 아파트관리업무 등의 협의체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수행요원을 통해 위험성평가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직능단체들은 안전관련학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소지한 수행요원 170여명을 선발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수행요원들은 올 11월까지 전국 4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업종의 위험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안전교육, 재해예방 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